

의안 번호	제2602호 ~ 제2604호
----------	--------------------

2025. 5. 13.(화) 10:00
제36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

검 토 보 고 서

- 안건 : 3건(개정조례안 1, 개정규칙안 2)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백윤석

목 차

□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02호
- 제출일자 : 2025. 4. 15.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요구
-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인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세부내역서 등 누리집 공개 의무화를 통한 부패행위에 대한 근원적 진단 및 차단 확보

3. 주요내용

- 정의 및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4조)
- 연구 활동 범위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회의 및 연구활동비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 연구활동비 집행·관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4조)

4. 관련근거

-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활동 및 연구과제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및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투명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03호
- 제출일자 : 2025. 4. 18.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회의장(심민섭 의원)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 국외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개선(안 제4조)
- 공무 국외 출장 사전검토 강화(안 제5조 ~ 안 제8조)
- 사후관리 강화(안 제12조, 안 제15조)
- 비용지출 제한(안 제13조)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공무원 여비 규정」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04호
- 제출일자 : 2025. 4. 18.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의회 회의 공개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대상 외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안 제48조제1항)
 -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실시간 중계(안 제81조의2)
 - 비공개 대상 외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 규정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주민 참여 확대 및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록 공개 시기, 비공개 대상 외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605호~제2616호
----------	---------------

2025. 5. 13.(화) 10:00
제368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

검 토 보 고 서

안 건 : 11건
(제정조례안 5, 개정조례안 4, 계획안 2)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중

목 차

-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4
-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5
-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7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05호
- 제출일자 : 2025. 4. 15.
- 제 출 자 : 차상현의원(주민복지과)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장성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등 (안 제4조 ~ 제5조)
-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행정지도(안 제6조 ~ 제7조)

4. 관련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08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장성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성 및 자격,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임기 및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제보사항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4. 관련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군민의 군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09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 및 군정 운영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군수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사업시행, 청렴 교육·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이용·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2조)

4.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장성군의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0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요건 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위원회 사무처리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4.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07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회의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

부서명	출연기관	2025년 출연금		변경이유	관련법령
		당초	변경		
농 산 유 통 과	(재)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1,000,000	1,200,000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 확대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직원 추가 채용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18조

5. 검토의견

- 본 변경계획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 확대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자 2025년도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에 대해 회의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1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안 제26조제2항제17호)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 기준에 적합한 농촌체류형 쉼터

4.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개정)
 - 제2조제3항제2호 라목(농지의 범위)
-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개정)
 - 제3조의2제1의2호(농막 등의 범위)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농촌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2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지원내용(안 제6조)
 - 시체검안비, 운반비,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비용
 - 화장 및 봉안비용
 - 지원한도 :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수 있음

4.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시신등의 처리) 및 제2조제16호(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고독사 증가 추세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3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회 지원(안 제11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회 지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경로식당 등 설치·운영(안 제22조)
 -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으로 확대
- 노인의 날 등 행사(안 제23조)
 -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의 날”을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으로 확대
- 통합돌봄 사업(안 제24조)
 -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요양·돌봄생활 유지, 동행서비스 제공 등 홀로사는 노인 등 돌봄지원 관련 내용 추가

4. 관련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회 지원, 경로식당 등 설치 운영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4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군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감면기한 연장 : (현행) 2024. 12. 31. ⇒ (개정) 2027. 12.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에 따른 제목 정비(안 제5조)
 - (현행) 문화재에 대한 감면 ⇒ (개정)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4.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5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5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2건(토지 1, 건물 1)

(단위 : m², 천원)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비고
계	1개 사업		2,517	4,133,615	
토지	아이행복 돌봄·교육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삼계면 사창리 145-1	1,917	133,615	
건물			600	4,000,00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위 : m², 천원)

구 분		필지수 / 동수	면적	재산가액	비고
계		1필지 / 1동	2,517	4,133,615	
취득	토지매입	1필지	1,917	133,615	
	건물신축	1동	600	4,000,000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1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6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군민의 감염병 면역 형성 및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 (현행) 백일해 :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개정) 백일해 :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

4.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임시예방접종)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 안	제2617호 ~
번 호	제2618호

2025. 5. 13.(화) 15:00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

검 토 보 고 서

- 안전 : 2건(제정 조례안1, 개정 조례안 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윤석

목 차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5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7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재난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당초)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변경) - 「장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규정(안 제6조)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조건의 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 항목
별로 구분 규정(안 제7조)

4. 관련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8호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
- 회부일자 : 2025. 5. 2.

2.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4.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2606
----------	------

2025. 5. 14.(수) 11:00
제368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 성 군 수
- 회부일자 : 2025. 5. 12.

II.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1. 편성개요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및 지방채 발행,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변경 등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함.

2.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235억원으로 기정액 5,708억원 대비 528억원이 증액됨.
- 그 중 일반회계는 6,155억원으로 525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0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 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가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623,549	570,778	52,771	9.25	
일 반 회 계		615,525	563,086	52,439	9.31	
특 별 회 계		8,024	7,692	332	4.31	
	건축진흥	90	120	-30	△25.08	
	의료급여사업	710	710	0	0	
	공공실버주택	1,241	1,241	0	0	
	드림빌	502	502	0	0	
	주차장 운영	256	256	0	0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92	92	0	0	
	주민소득지원 기금	152	152	0	0	
	상수도사업	4,568	4,568	0	0	
	장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	51	0	0	
	장성군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362	0	362	순증	

(참고) 2024년 예산 편성규모

(단위: 억원)

구 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편성규모 (증액)	5,268	5,837 (569↑)	6,192 (355↑)	6,226 (34↑)

① 일반회계

○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5,630억원 대비 524억 3천 9백만원이 증액(9.31%)된 6,155억원임.

○ 세입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7억 3천만원이 감액됨.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억 9천 8백만원, 조정교부금 20억 6천 2백만원, 국비보조금 41억 8천 8백만원, 도비보조금 87억 6천 6백만원, 지방채 112억원이 각각 증액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0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615,525	100	563,086	52,439	9.31	
지 방 세	43,754	7.11	43,754	0	0	
세 외 수 입	50,776	8.25	55,506	-4,730	△8.52	
경 상 적 세 외 수 입	7,927	1.29	7,927	0	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9,815	1.59	8,515	1,300	15.2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3,034	5.37	39,064	-6,030	△15.44	
지 방 교 부 세	239,059	38.84	238,161	898	0.38	
조정교부금 등	10,062	1.63	8,000	2,062	25.77	
보 조 금	208,219	33.83	195,265	12,954	6.63	
국 고 보 조 금 등	154,472	25.10	150,284	4,188	2.79	
시·도비보조금 등	53,747	8.73	44,981	8,766	19.49	
지 방 채	11,200	1.82	0	11,2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455	8.52	22,400	30,055	134.17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은

- 먼저, 자체사업으로 황룡전통시장 리모델링 공사 3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12억원, 아이행복 돌봄교육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40억원, 장성읍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장성읍 안평2리 잠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8억원, 로컬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17억원, 동화면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0억 9천만원, 장성군 파크 골프장 신규조성사업 20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 또한, 보조사업으로는 장성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7억 5천만원,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하천 석축정비 사업 14억 8천만원,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7억 5백만원, 잔디 객토지원사업 9억 9백만원, 사방댐 설치사업 7억 5천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21억원 등이 계상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성질별)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615,525	100	563,086	52,439	9.31
인 건 비(100)	65,834	10.70	64,576	1,258	1.95
물 건 비(200)	34,373	5.58	33,023	1,350	4.09
경 상 이 전(300)	238,973	38.82	233,177	5,796	2.49
자 본 지 출(400)	268,561	43.63	226,664	41,897	18.48
융자및출자(500)	0	0	0	0	0
내 부 거 래(700)	2,682	0.44	2,119	563	26.56
예비비및기타(800)	5,102	0.83	3,527	1,575	44.64

② 특별회계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6억 9천 2백만원 대비 3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80억 2천 4백만원임.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3천 1백만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5억 6천 3백만원 증액 편성, 총 3억 3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8,024	100	7,692	332	4.31	
세 외 수 입	4,126	51.42	4,357	-231	△5.30	
경상적 세외수입	3,446	42.94	3,447	-1	△0.03	
임시적 세외수입	460	5.73	660	-200	△30.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9	1.98	189	-30	△15.93	
지 난 연 도 수 입	61	0.76	61	0	0	
보 조 금	216	2.70	216	0	0	
국 고 보 조 금 등	189	2.35	189	0	0	
시·도비보조금 등	27	0.34	27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82	45.89	3,119	563	18.05	
보전수입등	1,616	20.14	1,616	0	0	
내부거래	2,066	25.75	1,503	563	37.45	

○ 세출예산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로
3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사업으로는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억 6천 2백만원이 순증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성질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증감액	증감율
계	8,024	100	7,692	332	4.31
인 건 비(100)	278	3.47	294	-16	△5.37
물 건 비(200)	3,398	42.35	3,330	68	2.05
경 상 이 전(300)	787	9.80	775	12	1.50
자 본 지 출(400)	2,000	24.92	1,844	156	8.44
융자 및 출자(500)	150	1.87	150	0	0
예비비및기타(800)	1,411	17.59	1,299	112	8.62

Ⅲ. 세출예산안 편성현황

□ 재원별 현황

- 자체사업 : 295억원 (56%)
- 보조사업 : 233억원 (44%) ◆국비 67, 도비 102, 군비 64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능별)	1회추경		본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3,549	100	570,778	100	52,771	9.25
일 반 공 공 행 정	27,258	4.37	23,875	4.18	3,383	14.17
공공질서및안전	21,520	3.45	19,655	3.44	1,865	9.49
교 육	5,140	0.82	4,370	0.77	770	17.63
문 화 및 관 광	40,321	6.47	29,711	5.21	10,610	35.71
환 경	65,733	10.54	64,741	11.34	992	1.53
사 회 복 지	137,509	22.05	131,158	22.98	6,351	4.84
보 건	11,077	1.78	10,175	1.78	902	8.86
농 립 해 양 수 산	124,540	19.97	108,553	19.02	15,987	14.7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971	3.68	17,036	2.98	5,935	34.84
교 통 및 물 류	25,491	4.09	21,171	3.71	4,320	20.41
국토및지역개발	64,314	10.31	63,983	11.21	331	0.52
예 비 비	3,500	0.56	3,500	0.61	0	0
기 타	74,175	11.90	72,850	12.76	1,325	1.82

□ 부서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조직별)		1회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3,549	100	570,778	100	52,771	9.25
기	획 실	6,091	0.98	5,969	1.05	122	2.05
인	구 경 제 실	20,296	3.25	15,354	2.69	4,942	32.19
관 광 복지국	소 계	276,742	44.38	258,289	45.25	18,453	7.14
	총 무 과	75,821	12.16	74,164	12.99	1,657	2.23
	민 원 봉 사 과	3,310	0.53	2,055	0.36	1,255	61.07
	관 광 과	12,693	2.04	9,779	1.71	2,914	29.79
	문 화 교 육 과	20,240	3.25	16,148	2.83	4,092	25.34
	주 민 복 지 과	37,472	6.01	36,400	6.38	1,072	2.95
	가 족 행 복 과	101,490	16.28	96,213	16.86	5,277	5.48
	환 경 과	17,180	2.76	17,108	3.00	72	0.42
	세 무 회 계 과	8,536	1.37	6,422	1.13	2,114	32.93
건 설 농정국	소 계	208,251	33.40	181,984	31.88	26,267	14.43
	재 난 안 전 과	21,607	3.47	19,817	3.47	1,790	9.04
	건 설 과	46,911	7.52	37,530	6.58	9,381	24.99
	지 역 개 발 과	26,859	4.31	25,091	4.40	1,768	7.05
	농 업 축 산 과	53,830	8.63	51,213	8.97	2,617	5.11
	농 산 유 통 과	17,656	2.83	13,892	2.43	3,764	27.10
	산 립 편 백 과	20,373	3.27	16,940	2.97	3,433	20.26
	교 통 에 너 지 과	21,015	3.37	17,501	3.07	3,514	20.08
보 건 소	소 계	11,958	1.92	11,007	1.93	951	8.64
	보 건 정 책 과	6,028	0.97	5,335	0.93	693	12.99
	건 강 증 진 과	5,930	0.95	5,672	0.99	258	4.54
농 업 기술센터	소 계	13,313	2.14	11,940	2.09	1,373	11.50
	농 촌 지 원 과	9,698	1.56	8,652	1.52	1,046	12.09
	농 업 기 술 과	3,615	0.58	3,288	0.58	327	9.96
체 육 사 업 소		14,264	2.29	9,880	1.73	4,384	44.37
맑은물관리사업소		63,203	10.14	68,409	11.99	-5,206	△7.61
황룡강사업소		3,876	0.62	2,806	0.49	1,070	38.12
의회사무과		1,228	0.20	1,218	0.21	10	0.82
읍 면		4,327	0.69	3,922	0.69	405	10.33

□ 부서별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사업비	비고
합 계		73개 사업	39,676	
기획실	자체	공모추진 연구용역비(공통)	40	
인구경제실	자체	황룡전통시장 리모델링 공사(지방소멸대응기금)	3,000	
	자체	황룡농협 구)하나로마트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550	
	자체	장성 북이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환경, 재해, 문화재)	400	
	자체	청년센터 건립공사(지방소멸 대응기금)	400	
	보조	장성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750	
총무과	자체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정보통신 회선 정비	120	
	자체	행정업무용 PC 구입	80	
	보조	2025년 전라남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80	
민원봉사과	자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1,223	
관광과	자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450	
	자체	불꽃 라이브 쇼	160	
	자체	읍면 소규모 마을축제(남면, 동화면, 북일면)	90	
문화교육과	보조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하천 석축정비사업	1,480	
	보조	백양사 극락보전 주변 운문암 석축 보수 정비사업	628	
	보조	장성 백양사 청고당 개축	265	
	보조	백양사 대웅전 주변 백운당 이축사업	204	
	보조	2025 하서 전국 휘호대회	50	
	자체	중학생 국외역사문화탐방	65	
주민복지과	자체	향군회관 시설물 보수	20	
	보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993	
	보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17	
가족행복과	자체	아이행복 돌봄 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방소멸대응기금)	4,000	
	자체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400	
	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비(민간수행기관)	543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사업비	비고
환경과	보조	폐기물 위탁 처리	160	
	보조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지원	35	
세무회계과	자체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실과 재배치 공사, 비품 구입	700	
	자체	의회 청사 신축 공사비(2차)	780	
	자체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별관 구축	300	
	자체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창고신축 및 담장공사	300	
재난안전과	보조	동화면 송계5교 소교량 재가설사업	500	
	보조	범죄예방 CCTV 설치(원전지역자원시설세)	200	
	보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원전지역자원시설세)	200	
	자체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구축	140	
건설과	자체	장성읍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	
	자체	장성읍 안평2리 잠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00	
	자체	장성 삼계 중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 정비사업	500	
	자체	보건소~청운지하차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	
	자체	황룡면 다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00	
	자체	삼서면 우치리 상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50	
	자체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350	
지역개발과	보조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705	
	보조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76	
	자체	엘로우게이트 도색 정비사업	80	
농업축산과	보조	전락작물산업화(두류) 지원사업(시설장비)	590	
	보조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419	
	보조	어도 개보수사업(북이면 신월리 2개소)	350	
농산유통과	자체	로컬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1,700	
	자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350	
	자체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200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사업비	비고
산림편백과	보조	잔디객토지원사업	909	
	보조	사방댐 설치사업	750	
	보조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500	
	보조	평립댐 장미공원 활성화사업	300	
	보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00	
교통에너지과	자체	동화면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090	
	자체	어르신 택시 바우처	345	
	보조	도시가스 공급	800	
보건정책과	보조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242	
농촌지원과	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500	
	자체	한국난 재배 교육장 조성	150	
농업기술과	자체	애플망고 자가육묘시스템 조성	210	
	자체	신소득 작물 6차산업 기반조성	105	
체육사업소	보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2,100	
	자체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조성사업	2,000	
	자체	제3회 대한스포츠클럽협회장배 전국 배구대회	80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감리비	500	
	자체	상공마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00	
황룡강사업소	보조	2025년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 개최(예산성립전)	550	
의회사무과	자체	장성군 의회 35년사 발간	22	
	자체	신청사 개청식	20	
	자체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10	

IV. 검토의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과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528억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음
-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조정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재원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 및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성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하게 반영되어야 할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함.